

별첨 #5-1

승무, 신호분야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

(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)

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

| 검사항목 | 불합격 기준 |
|-------------------|--|
| | 최초검사 · 특별검사 |
| 가. 일반 결함 | 1) 신체 각 장기 및 각 부위의 악성종양 2) 중증인 고혈압증(수축기 혈압 180mmHg 이상이고, 확장기 혈압 110mmHg 이상인 경우) 3)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감염병 중 직접 접촉, 호흡기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 |
| 나. 코 · 구강 · 인후 계통 |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장애나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코 · 구강 · 인후 · 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|
| 다. 피부 질환 |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만성 피부질환자 및 한센병 환자 |
| 라. 흉부 질환 | 1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2) 활동성 폐결핵, 비결핵성 폐질환, 중증 만성천식증, 중증 만성기관지염, 중증 기관지확장증 3) 만성 폐쇄성 폐질환 |
| 마. 순환기 계통 | 1) 심부전증 2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(분당 150회 이상)이나 기질성 부정맥 3) 심한 방실전도장애 4) 심한 동맥류 5) 유착성 심낭염 6) 폐성심 7) 확진된 관상동맥질환(협심증 및 심근경색증) |
| 바. 소화기 계통 | 1)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종대 2) 간경변증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활동성 간염 3) 거대결장, 계실염, 회장염, 궤양성 대장염으로 난치인 경우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|
| 사. 생식이나 비뇨기 계통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만성 신장염 2) 중증 요실금 3) 만성 신우염 4) 고도의 수신증이나 농신증 5) 활동성 신결핵이나 생식기 결핵 6) 고도의 요도협착 7)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 요관결석 8)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|
| 아. 내분비 계통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중증의 갑상샘 기능 이상 2) 거인증이나 말단비대증 3) 애디슨병 4) 그 밖에 쿠싱증후군 등 뇌하수체의 이상에서 오는 질환 5) 중증인 당뇨병(식전 혈당 140 이상) 및 중증의 대사질환(통풍 등) |
| 자. 혈액이나 조혈 계통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혈우병 2)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3) 중증의 재생불능성 빈혈 4) 용혈성 빈혈(용혈성 황달) 5) 진성적혈구 과다증 6) 백혈병 |
| 차. 신경 계통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다리 · 머리 · 척추 등 그 밖에 이상으로 앓아 있거나 걷지 못하는 경우 2)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에 따른 후유증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3)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초신경질환 4) 머리뼈 이상, 뇌 이상이나 뇌 순환장애로 인한 후유증(신경이나 신체증상)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5) 뇌 및 척추종양, 뇌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6) 전신성 · 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7)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8) 만성 진행성 · 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(유전성 무도병, 근위축성 측색경화증, 보행 실조증, 다발성 경화증) |
| 카. 사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손의 필기능력과 두 손의 악력이 없는 경우 2) 난치의 뼈 · 관절 질환이나 기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3)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경우(운전업무에만 해당한다) |
| 타. 귀 | 귀의 청력이 500Hz, 1000Hz, 2000Hz에서 측정하여 측정치의 산술평균이 두 귀 모두 40dB 이상인 경우 |

| | |
|----------|--|
| 파. 눈 | <p>1) 두 눈의 나안 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.5 이하인 경우 (다만, 한쪽 눈의 시력이 0.7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.3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)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.8 이하인 경우(다만,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1.0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교정시력이 0.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)</p> <p>2) 시야의 협착이 1/3 이상인 경우</p> <p>3)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, 활동성,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,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</p> <p>4)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</p> <p>5) 색각이상(색약 및 색맹)</p> |
| 하. 정신 계통 | <p>1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지적장애</p> <p>2)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</p> <p>3)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</p> <p>4) 마약 · 대마 ·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알코올 관련 장애 등</p> <p>5) 뇌전증</p> <p>6) 수면장애(폐쇄성 수면 무호흡증, 수면발작, 몽유병, 수면 이상증 등)이나 공황장애</p> |